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2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총리<br>(국가보훈처 소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2. . .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 법률 시행령에 병무청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, 자료 요청 항목을 구체화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 기관에 병무청 추가 및 요청 항목 구체화(안 제3조)

- 1)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외에 병무청장을 추가
- 2)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항목으로 성명·군번·병과 외에 각 군별·계급 등을 추가하는 등 요청항목 구체화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방부장관”을 “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성명·군번·병과”를 “성명·군번·병과·각 군별·계급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방부장관”을 “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02 - 5717 |